

아동학대 현황과 대응 정책

심의선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 차장

2020년은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 사건까지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일어난 한 해였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아동 인구 1,000명당 4명 정도의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이고 있으며 중복 아동학대 유형이 전체 사례의 4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았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의 주요한 통계를 통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매년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2020년에 일어난 중대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중점 추진 정책을 소개하며 이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제언하였다.

1. 서론

지난해는 6월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창녕 아동학대 사건, 9월 인천 형제 사건과 16개월 아동 사망사건까지 아동학대 중에서도 중대한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며 사회적인 관심을 넘어서 공분과 슬픔, 그리고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이 시기가 무계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 시점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6월은 21대 국회가 출범한 달이었고, 새로운 국회의 출범과 동시에 터진 충격적인 아동학대는 국가가 여야 할 것 없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아

젠다가 되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¹⁾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공공화를 선포(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및 조사역할 수행 등)하였고, 그에 따라 2020년 3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10월 1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지자체에 전사적으로 배치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새로운 정책 추진과 함께 발생한 지난해의 주요 사건은 공공화라는 과제와 함께 중대한 범죄 또한 적극적으로 예방·방지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한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이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공감

1) '2019년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보호권, 인권과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의 4개 영역에서 1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음.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2019년 5월 23일자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 내일만큼 오늘이 빛나는 우리 -")

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표출되며 온 나라가 충격적인 이슈에 공분하고 목소리를 내는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를 흔들었던 2020년에만 유독 아동학대 사건이 많았던 것일까? 답하자면 ‘아니다’. 아동학대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신고접수 전화에 이어 대응체계(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사법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가 작동하여 조사와 판단 등을 통해 아동들의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렇게 중대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국가의 방안은 존재하는가? ‘그렇다.’ 정부는 중대사건 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본고는 지난해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생길 수 있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큰 질문에 대해 통계 중심의 아동학대 현황을 알리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최근 아동학대 대응 정책을 소개한 후, 이러한 정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제시하고자 한다.

2. 아동학대 주요 현황

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매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아동학대 주요통계²⁾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는 적게는 10%, 많게는 59.6%까지 증가하였다. <표1>을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 대비 아동학대 의심사례 비율은 평균 90% 내외로 매우 높고, 그 중 학대사례로 판단되는 비율이 평균 73%로 이어져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실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비율이 일정하게 높아서 학대로 판단되는 유효한 신고접수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결과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한 건 한 건이 우리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렇듯 아동학대는 중요한 중대사건이 일어날 때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표 1>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단위 : 건)

연도	구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의심사례 건수	신고접수 대비 의심사례 비율	아동학대사례 건수	의심사례 대비 학대사례 비율	전년대비아동학대사례 증가율
2015		19,214	16,651	87%	11,715	70%	-
2016		29,674	25,878	87%	18,700	72%	59.6%
2017		34,169	30,923	91%	22,367	72%	19.6%
2018		36,417	33,532	92%	24,604	73%	10.0%
2019		41,389	38,380	93%	30,045	78%	22.1%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8, pp.229-23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19-21, 234-24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3-35, 227-228.
 2018-2019: 보건복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2) 본고에 활용된 통계는 2015-2017년은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간한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서, 2018-2019년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활용하였다.

나. 피해아동 발견율

피해아동 발견율은 아동인구 1,000명 기준으로 몇 명의 아동에게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수치이다. <표2>에 따르면 통계청의 추계아동 인구(0~17세)를 기준으로 피해아동 발견율은 19년 3.81%(피밀)로 우리나라 아동 인구 1,000명당 약 4명 정도로 나타나며, 최근 5년간 평균 28%씩 증가해왔다. 피해아동의 발견율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9%로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매년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재 발견된 아동학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들은 더 발견돼야 하며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발견율

에 이를 때까지는 아동학대 사건이 더 발견될 것임을 예측해볼 수 있다.

다. 아동학대 유형

<표3>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을 분류한 내용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4가지의 유형이 중복된 학대가 매년 4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단독유형으로는 2015년은 신체학대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정서학대가 가장 높았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위 통계는 학대의 유형이 한 가지의 단순한 학대로 끝나지 않고 학대가 일어날 때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건수

구분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추계아동 인구	8,885,533	8,694,953	8,467,386	8,255,490	7,888,218
아동학대 사례	11,715	18,700	22,367	24,604	30,045
피해아동 발견율	1.32%	2.15%	2.64%	2.98%	3.81%
전년 대비증가율	-	60%	20%	10%	22%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9, 236.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1, 24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35.
 2018-2019: 보건복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표 3>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유형

(단위 : 건)

연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5	1,884 16.1%	2,046 17.5%	428 3.7%	2,010 17.2%	5,347 45.6%	11,715 100%
2016	2,715 14.5%	3,588 19.2%	493 2.6%	2,924 15.6%	8,980 48.0%	18,700 100%
2017	3,285 14.7%	4,728 21.1%	692 3.1%	2,787 12.5%	10,875 48.6%	22,367 100%
2018	3,436 14.0%	5,862 23.8%	910 3.7%	2,604 10.6%	11,792 47.9%	24,604 100%
2019	4,179 13.9%	7,622 25.4%	883 2.9%	2,885 9.6%	14,476 48.2%	30,045 100%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31, 238.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242-24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37, 236.
 2018-2019: 보건복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라.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표4〉에 따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에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비율이 매년 75% 이상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사건이 계부모 가정과 입양 부모 가정에서 일어났고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칫 계부모, 입양부모가 아동을 많이 학대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친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학대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가정 형태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학대 사건은 자녀를 둔 가정 모두가 관심과 경각심, 나아가 사회가 함께 아동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마. 피해아동 상황

신고접수된 사례가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피해아동에 대한 상황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중 원가정에 그대로 보호되는 원가정보호가 가장 높다. 그다음으로는 분리보호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표5〉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율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실제 건수로는 3,000건 정도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분리보호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면 재발 위험이 큰 경우나 신체·정서적 치료 등을 위해 결정되며 5년간 평균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17%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아동들이 지속해서 학대로 인해 분리되고 있음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4〉 최근 5년간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단위 : 건)

구분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부모	친부모	8,843	75.5%	14,218	76.0%	16,386	73.2%	18,085	73.5%	21,713	72.3%
	계부모	473	4.0%	756	4.0%	742	3.3%	777	3.2%	893	3.0%
	입양부모	32	0.3%	74	0.4%	59	0.3%	58	0.2%	94	0.3%
	소계	9,348	79.8%	15,048	80.5%	17,187	76.8%	18,920	76.9%	22,700	75.6%
친인척	562	4.8%	795	4.3%	1,067	4.8%	1,114	4.5%	1,332	4.4%	
대리양육자	1,431	12.2%	2,173	11.6%	3,343	14.9%	3,906	15.9%	4,986	16.6%	
타인	187	1.6%	201	1.1%	294	1.3%	360	1.5%	663	2.2%	
기타	166	1.4%	454	2.4%	441	2.0%	304	1.2%	364	1.2%	
파악불가	21	0.2%	29	0.2%	45	0.2%	-	0.0%	-	0.0%	
계		11,715	100%	18,700	100%	22,377	100%	24,604	100%	30,045	100%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239-240.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2, pp. 244-245.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238-239.

2018-2019: 보건복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표 5〉 최근 5년간 피해아동 상황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원가정 보호	7,760	66.2%	13,573	72.6%	17,589	78.6%	20,164	82.0%	25,206	83.9%
가정복귀	1,164	9.9%	1,347	7.2%	1,139	5.1%	1,020	4.1%	989	3.3%
분리보호	2,772	23.7%	3,730	19.9%	3,527	15.8%	3,287	13.4%	3,669	12.2%
기타	-	0.0%	-	0.0%	54	0.2%	101	0.4%	121	0.4%
사망	19	0.2%	50	0.3%	58	0.3%	32	0.1%	60	0.2%
계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604	100%	30,045	100%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2-33.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24-25, p. 251.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7-38.
 2018-2019: 보건복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표 6〉 최근 5년간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율

(단위 : 건)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수치	비율
아동학대사례건수	11,715	100%	18,700	100%	22,367	100%	24,064	100%	30,045	100%
학대행위자 사법처리 건수	3,564	30.4%	6,018	32.2%	7,297	32.6%	7,988	33.2%	10,998	36.6%

자료: 2015-2017: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p. 33-34.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252.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38
 2018-2019: 보건복지부(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48-57.
 보건복지부(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 pp. 57-67.

바.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율

〈표6〉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율이다. 아동학대 사례 중 그 행위가 중대한 범죄 수준이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 아동에 접근 금지 또는 사법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사법적 개입이 이루어진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행위자 사법처리건수는 수치와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19년 기준으로 36.6%를 나타내고 있어 아동학대 사례 중 학대행위자에게 사법적 개입이 적극적으로 필요

한 수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학대 대응 정책

2019년부터 정부는 민간 신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개입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사 거부·신변위협 등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지자체에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정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다.³⁾ 그 결과 체

3)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

계 개편을 담은 법률안⁴⁾이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며 2020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3년간) 지자체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고 실제 20년 말 실제 290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일부 배치가 완료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2020년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을 통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해였기 때문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시기였다. 지자체에 누구를 언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의 문제, 배치되는 공무원의 매뉴얼 마련과 역량 강화교육 준비,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역할 조정 및 협력 등 법안 통과 이후 정책 시행 준비로 6개월의 시간은 매우 빠르게 흘러

갔다. 하지만, 앞에도 언급했던 아동학대 중대 사건이 6월과 9월에 연이어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⁵⁾도 2가지가 마련되어 발표되었다.

〈표7〉은 2020년 7월에 발표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과 21년 1월에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정책과제를 비교한 내용이다.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은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서 정보공유의 분절성과 인프라 부족 및 다른 제도와의 충돌이 문제가 됨에 따라 정보공유와 인프라 개선, 제도적 보완을 중요하게 답아냈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학대 대응의 과장상 문제점이 발생하여 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갖

〈표 7〉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정책과제 비교표

대책명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발표시기	'20.7.29.	'21.1.19.
	[정보공유 연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현장 발굴 체제 강화 부처 간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 연계 (개인정보보호와의 균형 도모) 학대아동 빅데이터 분석·활용 	[초기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전문성 강화 교육 대응인력 역할 정립 및 협업 강화 적극 조치 위한 이행력 확보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보호시설 확대 학대조사업무 공공화 전면 시행 	[대응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대응인력 확충 및 기능 강화 업무여건 개선 중앙 및 시·도의 인력 지원체계 강화
정책과제	[친권제한·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개정 보호대상아동의 친권보충제도 등 개선 즉각 분리제도 도입 	[분리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즉각분리 이행을 위한 보호 인프라 확충 지자체 별 보호시설 격차 조정 체계 마련
	[대응 단계별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발굴] 신고제도 내실화 등 [초기대응] 현장조사 이행력 강화 등 [보호·지원] 보호기관 간 지원 편차 완화 등 [재발방지] 학대 발생 가정 사후관리 등 	[처벌 및 인식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형기준 개선 제안 등 사법부 협력 강화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 캠페인 학교, 지자체의 학대 발견 강화
		[입양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절차 전반 국가·지자체 책임 강화

주: 본 고를 작성하는 시점은 대책이 이미 발표되고 실행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대책의 추진과제가 진행 또는 완료될 수 있음.

4) 아동복지법 법률 제17206호,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7087호

5)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20.7.29.)」,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21.1.19.)」

추고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입양제도의 국가 책임 강화 내용을 담았다.

두 가지 대책 내용을 토대로 중점 추진내용을 3가지로 압축하자면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대응체계 간 협력 강화 △즉각 분리제도 적극 시행 △징계권 조항 개정 및 아동학대 처벌기준 개선으로 볼 수 있다.

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확충 및 전문성 제고·대응체계 간 협력 강화

아동복지법상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 배치할 수 있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1년 12월까지 지자체에 전사적으로 배치하고 이들이 현장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4주간의 시간을 투입하여 이론·실습·파견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 10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소를 추가로 확보하여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지원하는 체계를 견고히 하고 사법기관·지자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 매뉴얼 마련 및 합동 교육 등을 실시한다.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심층사례관리전담기관으로 역할을 전환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사례 개입을 한다.

나. 즉각 분리제도 적극 시행

21년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분리보호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인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기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뉴얼을 만든다. 또한 아동 분리보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 신설 및 일시보호시설 임시 운영 등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다. 징계권 조항 개정 및 아동학대 처벌기준 등 개선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양형기준 개선을 양형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4. 순조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

이상의 아동학대 대응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시 되는 요건을 3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가. 가정의 건강한 순기능의 보존

긍정적 훈육은 가정의 건강한 순기능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은 특정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 개편이

6) 민법 915조 삭제(2021.1.26. 시행)

7) 2021.1.21.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 제출 완료(보건복지부 장관 → 양형위원회)

되기 때문에 특정한 가정 형태에 대해 오해하거나 건강한 가정의 역할에 대해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초점은 피해아동의 적극적 보호와 가정 기능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긍정적 훈육이나 존중의 소통을 고민하는 건강한 가정까지 제도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또한, 아동학대는 특정 가정 형태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양육하는 어느 가정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므로 특정 가정 형태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우리 가정의 양육 방법을 점검하고 건강한 양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정책이 무르익는데 필요한 기다림

정책이 추진·실행되어 결과들이 무르익는 데 걸리는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라는 이슈는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워서 대책의 신속성과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정책은 많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게 되며 실행계획을 통해 순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또한 시행하는 동안 장애요인이나 문제 등을 해결해가며 완성도를 높여간다. 정책은 과도기를 충분히 지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고 공공성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현장 인력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드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정책은 기다림이 필요하다.

다. 자극적인 언론보도에 대한 개선

자극적인 언론보도는 지양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아동학대 증대사건의 상세한 묘사를 통해 자극적인 내용을 알리는 일부 언론보도가 경쟁적으로 지속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함께 공감하고 대안 제시나 국민적 인식 증진이 필요한 시기에 분노와 개입된 기관이나 종사자에 대한 비난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점은 아쉬움이 있다. 언론보도 경쟁 속에서 피해아동의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하고 ‘체모’나 ‘양부’ 등의 표현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이 같은 피해는 현장 대응 인력과 건강한 가정, 그리고 피해 아동에게 상처를 주고 현장 대응을 위축되게 만들기 때문에 ‘아동학대 언론보도 가이드’ 마련 및 배포, 언론사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언론보도가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